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3차 신청 공고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5. 5. 8. ~ 7. 31.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가.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급여'의 경우 소(한우, 육우, 젖소)에 해당되며, 한우·육우는 비육우에, 젖소는 착유우에 급여해야 함. 단, 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 '질소저감사료 급여'의 경우 돼지, 소(한우, 육우), 닭(산란계)에 해당되며,
 -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한우·육우는 큰소후기,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해야 함. 단, 돼지는 모돈(임신돈, 포유돈)도 참여 가능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일괄급여). 단,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부분급여)
 -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신청시 부분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축사·급여시설 사진, 축사 도면도 등)를 제출

나.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한우·육우 및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장비·장치 내에 부착된 전력계의 전력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는 고정형 전기기계만 인정하되, 이동형 전기기계는 해당 장비·장치의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인정 가능

《 활동별 주요내용 및 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저메탄사료 급여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한우·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 사료 급여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및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돼지 5천원/두/년
		한우·육우 1만원/두/년 산란계 2백원/두/년
(퇴비) 강제송풍· 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p>▶ (기계교반·강제공기공급)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기계·장비(스크류, 에스컬레이터 등)를 활용해 퇴비 더미를 교반·혼합하고, 송풍장치(에어 블로워 등)로 공기를 강제 공급하는 통합 시스템을 추가하여 활용</p> <p>▶ (강제공기공급 방식)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송풍장치(에어 블로워, air blower)를 이용하여 퇴비단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추가하여 활용</p>	<p>한우·육우 기계교반· 강제송풍 13천원/톤/년</p> <p>한우·육우 강제송풍 5백원/톤/년</p> <p>젖소 기계교반· 강제송풍 15천원/톤/년</p> <p>젖소 강제송풍 5백원/톤/년</p>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공통	I.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II. 감액기준 동의서	
	III.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환경 친화 사료 급여	1.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돼지 사육농가만 제출
	2. (부분급여)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 사진, 도면도 등	부분급여 선택 시 제출
기계교반· 강제송풍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 시행지침 1부. 끝.